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객실승무원’ 을 ‘객실안전승무원’ 으로 변경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87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221468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 등)	2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1468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1. 28.
3. 회 부 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 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 등)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실승무원’의 용어를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 <u>객실승무원</u> ”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객실승무원~~ ----- ----- -----.
18. · 19. (생략)	18. · 19. (현행과 같음)
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운항승무원과 <u>객실승무원</u> 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 ----- <u>객실안전승무원</u> ----- ----- ----- ----- -----.
21. ~ 34. (생략)	21. ~ 34. (현행과 같음)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 ----- ----- -----

현행	개정안
속 운항승무원 및 <u>객실승무원</u>(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u>객실승무원</u>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u>객실승무원</u>은 항공업무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u>객실안전승무원</u>-----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 ----- ----- -----<u>객실안전</u> <u>승무원</u>은----- ----- ----- ----- ----- ----- ----- ----- -----<u>객실안전승무원의</u>----- ----- -----<u>객실안전승무원의</u>----- ----- ----- ----- ② -----<u>객실안전승무원</u>은 -----<u>객실안전승무원의</u>----- ----- ----- ③ ----- -----

현행	개정안
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u>객실승무원이</u>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u>객실승무원</u>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u>객실승무원이</u>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u>객실승무원의</u>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⑥ (생략)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 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u>객실승무원</u>은 항공업무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객실안전승무원이</u>----- -----<u>객실안전승무원의</u>----- -----<u>객실안전승무원은</u>----- -----. ④ ----- ---<u>객실안전승무원이</u>----- -----<u>객실안전승무원의</u>----- -----. ⑤ ----- --<u>객실안전승무원의</u>-----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 -----<u>객실안전승무원은</u>-----<u>객실안전승무원의</u>----- -----.

현행	개정안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 ----- ----- -----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u>객실승무원이</u>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9. ----- ----- <u>객실안전승무원이</u> ----- ----- <u>객</u> <u>실안전승무원의</u> ----- ----- ----- <u>객실안전승무원의</u> ----- -----
20. ~ 49. (생략)	20. ~ 4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 ----- -----.
1.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	1. ----- ----- ----- ----- -----

현행	개정안
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u>객실승무원의</u>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u>객실승무원</u>	----- <u>객실안전</u> <u>승무원의</u> ----- ----- ----- ----- ----- ----- <u>객실안전승무원</u>
2.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u>객실승무원</u>	2. ----- ----- ----- ----- <u>객실안전승무</u> <u>원</u>
3.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u>객실승무원</u>	3. ----- ----- ----- ----- <u>객실안전승무원</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객실승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안전 중심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는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인식을 명칭변경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6에 근거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운항승무원(Flight crew member)과 “객실승무원(Cabin crew member)”이라는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할 경우 명칭변경을 통해 기대되는 상징적·정책적 효과와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용어와의 불일치로 인한 국제기준과의 연계성 약화, 외국 항공당국과의 해석상 혼선, 행정상 추가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보다는 채용

절차 개편,¹⁾ 교육·홍보 정책을 통해 객실승무원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명칭변경의 실익과 필요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CAO 부속서6 정의 및 현행법상 정의 】

Flight crew member

A licensed crew member charged with duties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uring a flight duty period.(비행근무시간 동안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격증명 소지 승무원)

Cabin crew member

A crew member who performs, in the interest of safety of passengers, duties assigned by the operator or the pilot-in-command of the aircraft, but who shall not act as a flight crew member.(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운영자 또는 기장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서 운항승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 : ICAO Annex6 part1,

이와 관련하여 항공업계²⁾에서는 ICAO, IATA, EASA 등 국제기준에서도 공통적으로 "Cabin crew member"(객실승무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의 특성상 국내 명칭만 달리할 경우 국제기준과의 일관성 저해, 업무 및 기능상 불필요한 의사소통이 초래되고, 명칭개정에 따른 매뉴얼 정비, 국제기관 각종

1) 채널A,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에 체력시험 도입... "승무원은 안전요원"」, 2025.3.18.

2)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수검 시 국제용어 불일치로 원활한 수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명칭 개정 시 수반되는 비용 대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둘째, 개정안 수용 시 「항공사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에서 현행법의 ‘객실승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안 부칙에는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이 미비하므로, 타법상의 ‘객실승무원’ 또한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명칭 변경 시 타법개정 필요사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조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기타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에서 ‘객실승무원’ 용어 사용 중

나. 국토교통부 의견

명칭변경은 승무원에게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승객에게는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